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11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중단)처분 사전통지
- 2. 근 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9조제1항 및 제3항, 시행규칙 제20조제2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이○성	2005. 1. 6.	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로168번길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처분 사전통지	초기상담 실시 후 필수대면 상담 미실시 (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 및 연락두절 등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및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 등

- 4. 공고기간 : 2026. 9. 11. - 2026. 9. 24. (14일간)
- 5.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권선진(Tel. 031-231-7922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